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현실적인 운전학원 규정들을 시대에 맞게 현실화하고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미흡한 규정을 발굴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면허 업무에 필요한 규정들을 신설·정비함으로써 업무 효율 및 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9. 21. ~ 10. 31.) 예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운전면허증의 파기) 영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운전면허증 파기대장은 별지 제57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7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3(운전면허증의 수령) 법 제8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6조 또는 제87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은 본인이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다.

1. 운전면허증 발급신청(제57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경우를 포함한다) 당시 법 제87조의2에 따라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
2.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3.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4.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5.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6. 군 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사병으로 한정한다)인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118조제2항 중 “평균 70점 이상”을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별표 6 I 제1호 타목 (1) 중 “등에 설치한다”를 “시간대별로 속도제한을 다르게 하는 보호구역 등에 설치한다”로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2 (주) 제1호의 후단과,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1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1호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17의2 (주) 제2호 중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행정처분 결정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를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로 하고, 제3호부터 제4호를 각각 제4호부터 제5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2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2호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18 제1종 대형면허란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종	대형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삭제 <2018. 4. 25.> 5. 건설기계 가.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나.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다.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라.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트럭지게차 6.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이하 "구난차등"이라 한다)는 제외한다] 7. 원동기장치자전거
-----	------	---

별표 28 제1호 라목 (1) (가) 중 “별점감경교육”을 “별점감경교육 또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법 제73조제2항제5호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만 해당한다) 중 법규준수교육”으로 한다.

별표 32 제3호 가목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종 소형면허, 제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경우에는 기능교육강사가 교육생 5명의 이내의 범위에서 밀접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별표 34 I 제2호 중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행정처분 결정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를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로 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2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2호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34 Ⅱ에 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106조제4항제9호	시정명령	자격정지 1	자격정지 3
		또는 자격	月 초과	月 초과
		정지 1月	자격정지	자격정지
		이하	3月 이하	6月 이하

별표 34 Ⅲ에 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106조제4항제9호	시정명령	자격정지 1	자격정지 3
		또는 자격	月 초과	月 초과
		정지 1月	자격정지	자격정지
		이하	3月 이하	6月 이하

별표 35 I 제2호 중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행정처분 결정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를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로 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제3호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3. 2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2호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35 Ⅱ 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인적 배치 기준 위반	7.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강사배치기준 또는 법 제10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능검정원 및 강사의 배치 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113조 제1항제6호	학원	운영정지 60일	운영정지 180일	지정취소· 등록취소
			전문 학원	운영정지 60일	운영정지 180일	지정취소· 등록취소

별표 35 Ⅱ 34호부터 36호까지를 각각 35호부터 37호까지로 하고, 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타 명령 위반	34.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 위반한 때	법 제113조 제1항제12호	학원	3개월 이내 시정 명령 또는 운영 정지 10일 이하	운영정지 10일 초과 40일 이하	운영정지 40일 초과 180일 이하
			전문 학원	3개월 이내 시정 명령 또는 운영 정지 10일 이하	운영정지 10일 초과 40일 이하	운영정지 40일 초과 180일 이하

별표 36 7호의 금액란을 9,000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사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진 (설립자) 3.5cm×4.5cm (모자 벗은 상반신 으로 배경 없이 6 개월 내에 촬영한 것)
--

별지 제41호서식의 제목과 3. 응시자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실시공고

3. 응시자격

- 가.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나. 제1종 대형·특수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19세 이상으로서 운전경력(제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합니다)이 1년 이상인 사람

별지 제54호서식 중 ①용도란과 일반면허 교부대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용 도	☐ 경력증명용 ☐ 일반면허 갱신용 ☐ 보험처리용
------	---

일반면허	☐ 1종대형 ☐ 1종보통 ☐ 1종소형 ☐ 대형견인차 ☐ 소형견인차
교부대상	☐ 구난차 ☐ 2종보통 ☐ 2종소형 ☐ 원동기장치자전거

별지 제55호의2서식 중 직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COMMISSIONER OF 0000 0000
POLICE

직인

별지 제5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9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서식 1쪽 수령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령방법	[]방문 []등기우편 ※ 등기우편 발송시 발생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	---

별지 제65호서식 1쪽 수령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령방법	[]방문 []등기우편 ※ 등기우편 발송시 발생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	---

별지 제81호서식 접는선 아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귀하가 아래와 같이 운전면허 정지대상(취소대상)이 된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오니
년 월 일까지 ○○○경찰서(교통관리계·민원실)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사전통지
서, 운전면허증(분실 시 다른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내용 :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정지
일간

※ 토요일·공휴일은 휴무입니다(출석요구 기간 마지막 날이 휴무일인 경우 다음 평일까지 가능)

※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82호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2호의2서식 고지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알려드립니다.

1.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따라 승용·승합·화물자동차뿐 아니라 이륜자동차 등 모든 종류의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이 제한되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 1년간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2. 위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87호서식의 운전면허처분 이의 신청서에 이 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해당 시·도경찰청(경찰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의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제외합니다)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도경찰청(경찰서)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심판포털(www.simpan.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85호서식 고지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알려드립니다.

1. 위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도경찰청(경찰서)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위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6시간)을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93호서식 뒤쪽 좌측 사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진
(설립자)
3.5cm×4.5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내에
촬영한 것)

별지 제106호서식 제1쪽과 제3쪽 사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사진
3.5cm×4.5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내에
촬영한 것)

별지 제114호서식 앞쪽 사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진
3.5cm×4.5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내에
촬영한 것)

별지 제115호서식 앞쪽 사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진
3.5cm×4.5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내에
촬영한 것)

별지 제117호서식 뒤쪽 좌측 사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진 (설립자) 3.5cm×4.5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내에 촬영한 것)

별지 제127호서식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서류	1. 자격증(혈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증명사진(3.5cm×4.5cm) 2매
------	--

별지 제134호서식 사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진 3.5cm×4.5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내에 촬영한 것)
--

별지 제136호서식 사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진 3.5cm×4.5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내에 촬영한 것) 누 림 도 장

별지 제14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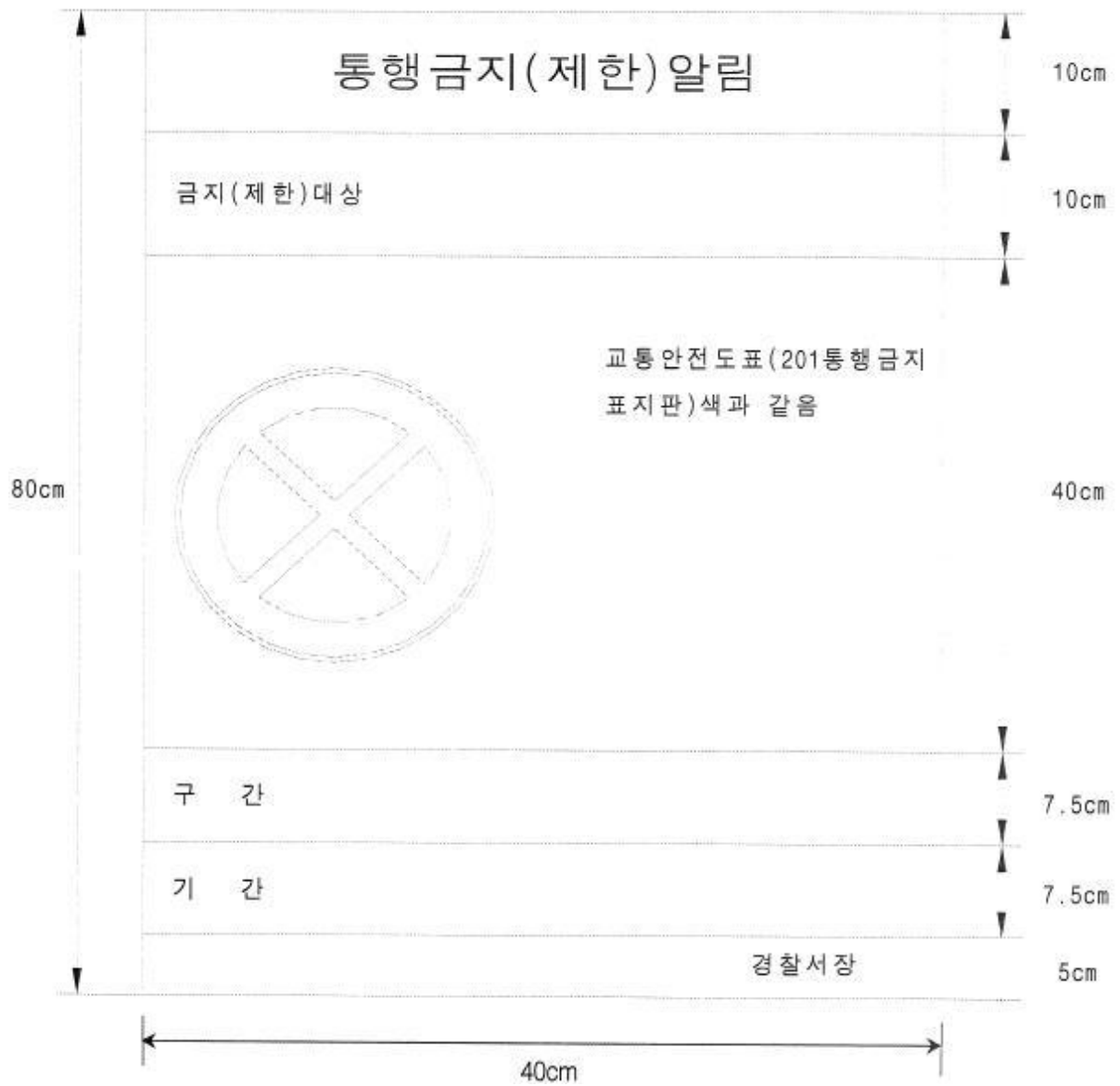
통행금지 또는 제한알림판(제10조제1항관련)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통행금지(제한) 시



(주) 도로의 폭 및 교통여건에 따라 표시판의 크기를 2~4배의 크기로 확대하여 설치할 수 있다.

나.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이 통행금지(제한) 시



(주) 도로의 폭 및 교통여건에 따라 표시판의 크기를 2~4배의 크기로 확대하여 설치할 수 있다.

[별지 제57호의2서식]

운전면허증파기대장

[illegible]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²)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 영문·국제·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운전면허증갱신발급(적성검사)연기[]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중복되는 경우 해당되는 곳 모두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확인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한글)	사 진 3.5cm×4.5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내에 촬영한 것)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갱신·적성 검사 연기	신청 사유	해외 체류[] 구속[]	재해 또는 재난[] 군복무[]	질병 또는 부상[] 기타[]	
	연기 기간	시작일	년 월 일	예상종료일	년 월 일
재발급	신청 사유	분실[] 훼손·오손[] 기타[]			
	분실 일자				
영문 [] 국제 [] 모바일 [] 운전면허증 발급	성명 (영문)	성			
	이름				
	모바 일	IC카드 발급[] 현장 QR 발급[]			
운전면허증 수령방법	방문[] 등기우편[] ※ 등기우편 발송시 발생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신청차종	[]자동 []수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 제78조의2제1항·제2항, 제80조제1항, 제81조제1항, 제83조제1항, 제85조제1항 및 제9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 (도로교통공단)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뒤쪽의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여권정보의 경우 여권을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기간 경과 전에 연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 연기신청을 한 사람은 연기사유 해제일부터 3개월 내에 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안내

1.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음주운전교육: 1회 위반 **12시간**, 2회 위반 **16시간**, 3회 이상 위반 **48시간** / 배려운전교육: 6시간 / 법규준수교육(의무): 6시간)을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2.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6시간. 다만, 음주운전교육은 1회 위반 **12시간**, 2회 위반 **16시간**, 3회 이상 위반 **48시간**)을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아니하면 범칙금(**10만원**. 다만, 음주운전을 2회 이상하여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15만원**)이 부과됩니다.
 - 1)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교통사고, 공동위험행위로 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교통사고, 공동위험행위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후 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
 - 2)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 중 어린이를 사상하는 사고를 유발하여 벌점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사람
 - 3) 초보운전자(최초 면허 취득 후 2년 이내인 사람)로서 1), 2) 외의 사유로 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3. 위 2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중 음주운전교육, 배려운전교육, 법규준수교육(의무) 또는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받으면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되고,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을 받으면 30일이 추가 감경됩니다.
4. 그 밖의 특별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일정·장소 및 수강료 등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으로 문의 바랍니다.

제 호	확 인
수 강 료 영 수 증 원 부	
1. 성 명 :	
2. 생년월일 :	
()에 따른 수강료 ()원을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년 월 일 직인

제 호	확 인
수 강 료 영 수 증	
1. 성 명 :	
2. 생년월일 :	
()에 따른 수강료 ()원을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년 월 일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6조의2(운전면허증의 파기) 영</u> <u>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운전면</u> <u>허증 파기대장은 별지 제57호의</u> <u>2서식에 의한다.</u>
<u><신 설></u>	<u>제78조의3(운전면허증의 수령) 법</u> <u>제8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u> <u>86조 또는 제87조제1항에 따라</u> <u>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은 본인이</u> <u>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u> <u>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u> <u>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운전면허</u> <u>증을 수령할 수 있다.</u> <u>1. 운전면허증 발급신청(제57조</u> <u>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u> <u>응시한 경우를 포함한다) 당시</u> <u>법 제87조의2에 따라 본인 여부</u> <u>를 확인한 경우</u> <u>2.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u> <u>3.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u> <u>4.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u> <u>동이 불가능한 경우</u> <u>5.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u> <u>속당한 경우</u> <u>6. 군 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u>

제118조(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검 정원의 자격시험) ① (생 략) ② 제1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 을 만점으로 하여 <u>평균 70점 이 상</u>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 다. ③ ~ ⑤ (생 략)	<u>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 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사병으로 한정한다)인 경우</u> <u>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 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u> 제118조(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검 정원의 자격시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 을 만점으로 하여 <u>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u>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	--